

목 차

■ 지평 소식 ■

- 지평,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1
- 지평,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설립2
-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 양곤에서 미얀마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3
- 지평, Pinsent Masons LLP와 공동으로 '중동지역 국제프로젝트 동향과 법률적 시사점 고찰'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4
- 지평, 본사에서 IHCF(인하우스카운슬포럼) 2월 정기세미나 개최6
-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및 지평 상임고문 영입7
- 김대식 상임고문 영입.....8
- 전성진 상임고문 영입.....9
- 강성국, 박정수, 김영문 변호사 영입10
- 김문희 변호사 영입.....12
- 한철용, 강민제, 박종완, 장소라, 김선국, 신은진, 김판수 변호사 영입13
-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김용진 변호사 영입16
- [공익] 창경궁, 경복궁 야간개방 자원봉사활동17
- [공익] 지평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18
- [공익] '2014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발간.....19

■ 주요 업무 사례 ■

- 지평, 유지인트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IPO) 관련 자문.....20
- 지평, 제노포커스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IPO) 관련 자문21
- 지평, 포스코특수강 매각 관련 자문22

■ 법률 논단 ■

- [금융규제] 핀테크와 금융규제23
- [노동] 쟁의행위 관련 쟁점26
- [조세] 2015년 M&A 개정 세법33

■ 최신 판례 ■

- [건설부동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관계.....40
- [헌법]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43
- [도산]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제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도 소멸하는지.....47
- [보험]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손해보험금의 공제 여부.....52

■ 최신 법령 ■

- [노동] 고용보험법 등 개정.....55
-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58
- [자본시장] 분리형 BW 허용안 국회 계류 중.....59
- [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60

■ 단신 ■

- 최승수 변호사,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인으로 위촉 外.....62
- 임성택 변호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外.....63
- 배성진 변호사,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外.....64
- 장윤정 변호사, 한국여성벤처협회 고문변호사로 위촉65

- 최정식 변호사, KOTRA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자문위원으로 위촉.....66
- 박근배 변호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자문위원으로 위촉.....67
- 권용숙 변호사, 인니 비즈클럽에서 '인도네시아 계약 및 분쟁실무'를 주제로 강의.....68
- 류혜정 변호사, 한러 정경컨퍼런스에서 '경제통상'을 주제로 발제.....69
- 김문희 변호사, '주요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의 기회와 위기'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70
- 이광선 변호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기학술대회의 제 1부(주제 : 파견법상 직접고용에서 쟁점과
해석) 토론자로 참석.....71
- 박성철 변호사, '제3국 법인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규제법 검토'를 주제로 법학평론에
연구논문 기고.....72
- 민창욱 변호사, 논문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 -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사건의
법적 쟁점' 저스티스 4월호 게재.....73

■ 지평 소식 ■

지평, 창립 15주년 기념 행사



법무법인 지평은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해외지사를 포함한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도에서 기념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공현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축사와 지평의 15년 역사를 돌아보는 '지평이 걸어온 길' 상영 외에도 다채로운 행사와 시상으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5년 간 고객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100년 지평'의 새 길을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지평 소식 ■

지평,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설립

법무법인 지평은 러시아 대형 로펌인 YUST와 제휴하여 지난 4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설립 하였습니다.

한국 로펌 중 해외사무소가 가장 많은 지평은 중국 및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7개 해외사무소에 이어, 러시아에 8번째 해외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리걸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평과 제휴한 YUST는 1992년에 설립된 러시아 대형 로컬 로펌으로, 80여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다수의 사무소를 보유하고, 러시아 고객 및 외국계 고객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명문 로펌입니다.

초대 러시아 사무소장으로 파견된 이승민 러시아변호사는 러시아 명문인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 대학(MGIMO)에서 학부부터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후 지평에서 8년 동안 러시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러시아 전문가입니다.

지평은 YUST와 협력하여 러시아 현지와 한국에서 유기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모스크바 사무소]

주소: 43, Sivtsev Vrazhek Lane, 119002 Moscow, Russia

Tel. + 7-495-795-3268 Fax. +7-499-241-1948

[지평 러시아·중앙아시아팀]

- 류혜정 변호사 Tel. 02-6200-1722 / Email. hjryu@jipyong.com
- 채희석 변호사 Tel. 02-6200-1757 / Email. hschai@jipyong.com
-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Tel. +7495795-3268 / Email. smlee@jipyong.com, smlee@yust.ru

■ 지평 소식 ■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 양곤에서 미얀마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은 지난 3월 25일 미얀마 양곤의 UMFCCI 빌딩에서 미얀마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미얀마의 통합투자법 개정을 비롯하여 새로운 법률들과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불명확한 규정과 당국의 실무 관행으로 투자자들의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어, 지평 미얀마는 현지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MJTD 마케팅 매니저인 Sato Kan의 '떨라와 공단 소개'와, 지평 미얀마의 이준엽 회계사가 '2015년 상반기 미얀마 투자 주요 세무 및 회계쟁점'을, 지평 미얀마의 유정훈 파트너변호사가 '2015년 상반기 미얀마 투자 주요 법률쟁점'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사진]

■ 지평 소식 ■

지평, Pinsent Masons LLP와 공동으로 '중동지역 국제프로젝트 동향과 법률적 시사점 고찰'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Pinsent Masons LLP와 공동 주최로 지난 5월 19일(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10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중동지역 국제프로젝트 동향과 법률적 시사점 고찰' 세미나를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평의 류혜정 변호사가 '국제건설 프로젝트에서 계약 권리 보호 및 분쟁 회피 방안'을, 배지영 변호사가 '중동지역 건설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특히 유의할 법적쟁점'을 각 발표하였고, Pinsent Masons LLP의 Mark Raymont, Vincent Connor 변호사가 '중동지역 건설/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한국회사들 계약권리의 집행 관련한 주요 쟁점' 등 최근 중동지역 국제프로젝트 동향과 법률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Pinsent Masons LLP는 중동지역에 진출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로펌으로, 특히 건설,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배지영 변호사가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관련 기사]

- 세계일보 - 법무법인 지평, 중동 진출 기업들 위한 세미나 열어(2015. 5. 19.)
- 국토일보 - 법무법인 지평-Pinsent Masons LLP, 세미나 개최(2015. 5. 19.)
- 로이슈 - 법무법인 지평, '중동 국제프로젝트 동향과 법률적 시사점 고찰' 세미나(2015. 5. 19.)

[관련 사진]



■ 지평 소식 ■

지평, 본사에서 IHCF(인하우스카운슬포럼) 2월 정기세미나 개최

지평은 지난 2월 25일 지평 본사에서 IHCF(인하우스카운슬포럼) 2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평 이병주, 손계준 변호사는 사내변호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2015년 예상 이슈(부당 내부거래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규제 동향 및 2015년도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지평 소식 ■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및 지평 상임고문 영입



(법무법인 지평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및 상임고문)

지평은 지난 4월 13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지평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및 상임고문으로 영입하였습니다.

김석동 고문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부 공무원으로 재무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봉직하였습니다.

1980년 공직에 발을 들이고 재정경제원 금융실명제 대책반장, 외화자금과장 등을 맡았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차관보,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지내는 등 경제·금융 정책을 다루는 핵심적인 직책을 맡아 왔습니다.

2008년부터 2년간 농협경제연구소 대표를 지냈고, 2011년부터 2013년 2월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역임하였습니다.

거시경제, 국내금융, 국제금융, 외환 등 경제정책 전반은 물론 실물경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고, 각 분야의 입법,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공직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였고, 특히 IMF 외환위기를 비롯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시기마다 전면에서 위기를 헤쳐 나가는 역할을 해내면서 '대책반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상임고문직과 아울러 '지평인문사회연구소'의 대표를 맡아 인문, 사회, 경제, 역사 분야의 연구와 출판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김대식 상임고문 영입



(법무법인 지평 **김대식 상임고문**)

지평은 지난 3월 2일 김대식 상임고문을 영입하였습니다.

김대식 고문은 육군본부 예산처장, 육군 중앙경리단장과 경리병과장, 그리고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국방분야와 방위사업분야에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전성진 상임고문 영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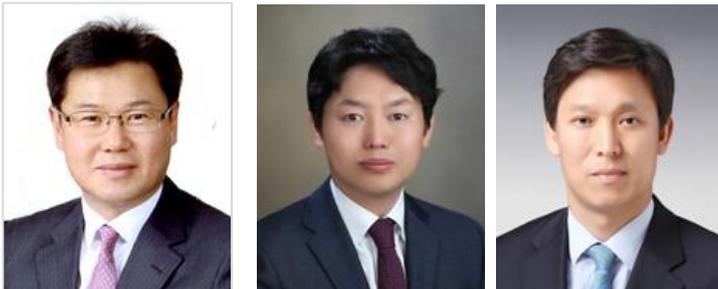
(법무법인 지평 **전성진 상임고문**)

지평 상해사무소는 지난 3월 2일 전성진 상임고문을 영입하였습니다.

전성진 상임고문은 30년 가까이 LG 상사에 근무하면서 대만, 홍콩, 북경, 상해 지사장과 중국본부장을 역임한 현장 출신 중국전문가입니다. 또한 LG 상사의 주요 사업부문인 석유화학사업부장과 에너지(자원개발) 사업부장, 부사장으로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회사경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경영인입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깊고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대륙 상해대표처, 우림건설 중국법인, LS 전선 중국법인 등의 고문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중국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 지평 소식 ■

강성국, 박정수, 김영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강성국 변호사, 박정수 변호사, 김영문 변호사)

지평은 지난 3 월 6 일 강성국 전 부장판사, 박정수 전 부장판사, 김영문 전 부장검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강성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1994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5년 3월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서 새출발하였습니다.

법관으로서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형사, 상사(회사)국제거래, 공정거래, 파산, 행정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변호사는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1997년부터 2015년 2월까지 판사로 근무하다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지평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20여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신청, 행정, 회사, 건설, 부동산, 조세, 노동, 산재, 의료, 도산, 가사, 공정거래 등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문 변호사는 부산지검, 창원지검 거창지청, 서울서부지검, 대구지검 검사를 거쳐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서 국적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청와대 근무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대구지검 및 수원지검 강력부장 검사를 역임하고 법무부에서 보호법제과, 법질서선진화과, 범죄예방 기획과 과장을 거친 이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장으로서는 기술유출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소송파트에서 제반 형사사건 분야, 특히 기술유출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김문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김문희 변호사**)

지평은 지난 3월 16일 김문희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문희 변호사는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이자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로서의 풍부한 경력과 경험을 쌓아온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입니다.

김문희 변호사는 국내 유수의 방송사, 영화제작사, 투자배급사, 매니지먼트사, 음반제작사, 음반유통사, 게임사, 인터넷기업 등을 위하여 방송, 영화, 게임, 공연, 인터넷, 연예매니지먼트, 스포츠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소송을 활발하게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과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투자, 공동제작 등에 관하여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한철웅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한철웅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3월 한철웅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한철웅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제 4기로 졸업한 후 현재 지평 소송파트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민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강민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3월 강민제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강민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제4기로 졸업한 후 현재 지평 소송파트에 소속되어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박종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3월 박종완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박종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제 4기로 졸업한 후 현재 지평 회사파트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장소라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3월 장소라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장소라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 4기 졸업생으로 현재 지평 금융파트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선국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김선국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3월 김선국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선국 변호사는 경찰공무원으로 5년간 근무하며 경제범죄 수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제 2회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지평 소송파트에서 소송·중재, 형사,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은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신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3월 신은진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신은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 2기)을 졸업한 뒤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2년간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지평 소송파트에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되기 전에는 중앙일보 취재기자로 6년간 일했으며, 인터넷 벤처업체를 공동 창업한 경력이 있습니다.

김판수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김판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3월 김판수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김판수 변호사는 금융파트에 소속되어 금융기관의 투자관련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지평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SK 텔레콤과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각 기술도입 및 신규사업 기획업무와 자원개발, 발전 및 에너지, SOC, 부동산 투자 등 대체투자펀드 운용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지평 소식 ■

사단법인 두루, 이주연, 김용진 변호사 영입



(사단법인 두루 이주연 변호사, 김용진 변호사)

지평이 설립한 공익법률단체인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 5월 11일 '두루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인권옹호 분야에 이주연 변호사, 사회적경제 분야에 김용진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두루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공익활동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실무 및 교육훈련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기본과 능력을 발전시키고 공익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지평 소식 ■

[공익] 창경궁, 경복궁 야간개방 자원봉사활동



법무법인 지평은 2015년 5월 7일과 8일에 창경궁 야간개방 봉사활동을, 5월 13일과 14일에 경복궁 야간개방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에는 지평 구성원 35명이 참여하여,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창경궁, 경복궁 안내 및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창경궁과 경복궁 야간개방 1일 최대 관람인원은 2,200명이며, 광범위한 구역에 많은 관람객이 모여 기업 및 단체 등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지평 소식 ■

[공익] 지평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4월 25일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토요일'은 기업이나 단체의 구성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고 판매함으로써 나눔과 순환을 지향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법무법인 지평은 2005년부터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이번 행사에 3,500점의 물품을 기증하고 행사 당일 30여 명의 임직원들이 일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물품 판매를 도왔습니다.

이날 행사의 수익금은 소외아동 정서지원 사업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지평 소식 ■

[공익] '2014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2014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평과 두루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루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관련 보고서]

- [2014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유지인트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IPO)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투자증권을 대리하여 공작기계업체인 유지인트의 코스닥시장 상장(IPO)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한국경제 - 유지인트, 청약 증거금 2조6500억 몰려\(2015. 4. 7.\)](#)

[담당 변호사]



윤영규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반정현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제노포커스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IPO) 관련 자문

지평은 한국투자증권 및 제노포커스를 대리하여 산업용 특수 효소 개량 생산 전문 업체인 제노포커스의 코스닥시장 상장(IPO)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머니투데이 - 제노포커스, 공모 청약 경쟁률 1206대 1.1.6조 몰려\(2015. 5. 19.\)](#)

[담당 변호사]



윤영규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반정현 변호사

■ 주요 업무 사례 ■

지평, 포스코특수강 매각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포스코를 대리하여 포스코특수강을 매각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



이승수 변호사



임이지 변호사



윤국정 변호사



구자형 변호사

■ 법률 논단 ■

[금융규제] 핀테크와 금융규제



(법무법인 지평 심희정 변호사)

최근 금융과 관련하여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가 핀테크일 것입니다. 핀테크(FinTech)는 문자 그대로 금융과 IT의 결합, 보다 구체적으로는 IT 수단을 이용하여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핀테크의 대표적인 분야로 모바일 수단을 이용한 간편한 지급결제, 인터넷전문은행 등 오프라인(offline) 기반 없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이 논의되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떤 새로운 핀테크 영역이 등장할지 현재로서는 선불리 예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금융업에서 IT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IT가 금융회사의 정보를 저장, 처리하는 지원부서(Back Office)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면 지금은 인터넷뱅킹 등 IT 수단에 의한 비대면(非對面)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IT는 금융회사의 주요 영업망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핀테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점망이 전혀 없는 은행, 신용카드 대신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휴대폰, 휴대폰과 휴대폰 사이의 송금 등 IT가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적인 금융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변경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의 금융규제는 대면(對面) 거래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면 거래를 전제로 한 금융규제 중 대표적인 것이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확인 제도였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후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변경)

에 따라 1993년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는 예금 등 금융 거래 시 본인의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후에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로 실지명의를 확인하라는 내용만 있으나, 감독당국에서는 신분증에 부착된 사진과 본인을 실제로 대조 확인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대면접촉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할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논의되었던 인터넷전문은행이 불발로 끝난 것도 이와 같이 대면 접촉을 통한 실명 확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몇몇 금융회사들이 OO 다이렉트라는 이름으로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상으로 쉽게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도 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실명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직원이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지점 거래를 전제로 한 실명확인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있었지만 핀테크의 대두와 함께 실명확인 방식의 개선 없이는 핀테크의 발전도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은 마침내 신분증 사본 확인, 기존 계좌로부터의 이체, 영상 통화 등 비대면 방식에 의한 실명 확인을 허용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좌이체, 인터넷쇼핑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공인인증서 제도도 대폭 변경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강제하고 있었으나 2010년 규정 개정을 통하여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인증수단의 안전성은 금융감독원내 인증방법평가위원회가 평가하였었는데, 이 평가위원회의 인증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수준의 인증기술로 인정받은 사례가 1건에 불과할 정도여서, 사실상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수단을 쓰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는 본인인증기술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3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인증방법평가위원회는 폐지함으로써 본인인증 기술의 채택을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문이나 홍채를 이용한 생체인

증 방법, 스마트폰의 유심(USIM)을 이용한 OTP 생성 방법 등 다양한 인증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핀테크의 활성화로 인한 금융규제의 변경 및 완화는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책임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시의 대면 확인을 대체하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이 확대되고 자금이체 등 전자금융거래 시 본인인증 방법 또한 다양하게 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면 확인에 의한 계좌 개설, 공인인증서 방식에 의한 자금 이체가 강제되던 시기에는 금융사고 발생 시 통장이나 공인인증서 등 각종 접근매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소비자의 과실이 주로 문제되었습니다. 금융회사의 관점에서는 위와 같은 규제가 불편함을 주기로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금융회사가 이러한 기준을 지키는 한 금융회사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률적인 본인 확인·인증 방법이 폐지되면서 금융회사는 적절한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나중에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면 금융회사는 자신이 선택한 수단이 적절하였는지, 또한 이와 같이 금융회사 별로 다른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하여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부터 감독당국 또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가 폐지되고 본인 인증 방법 등이 자율화되면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일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각종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또는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 사용 등 기존의 관행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금융업계에서도 새로운 본인인증 기술을 채택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점망을 통한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영업 방식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으며 핀테크 등을 통한 새로운 영업채널을 개척하는 것은 이제 금융회사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금융회사와 IT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통하여 주어진 자율과 책임을 조화롭게 수행한다면 핀테크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법률 논단 ■

[노동] 쟁의행위 관련 쟁점¹

(법무법인 지평 이광선 변호사)

1. 들어가며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이 최근 들어 새롭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방송 판결에서는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언론의 공공성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나, 대법원이 불법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를 곧바로 인정하지 않은 점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최근의 판례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특히 쟁의행위는 그 자체에 대한 적법성 판단뿐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 형사소송 등 관련 쟁점이 많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쟁의행위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근로자 쟁의행위의 정당성 한계

노조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4조), 반대로 해석하면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민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절차적으로 적법해야 합니다. 노조법은 쟁의행위가 발생한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

¹ 본 뉴스레터는 필자가 작성한 노동법률 2월호에 게재된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습니다(노조법 제45조). 그러나 판례는 서면통보를 위반하더라도 벌칙이 없고, 서면통보가 노동쟁의의 효력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² 서면통보를 위반하더라도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판례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따라 정당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해당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³ 그러나 조정 전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하므로(노조법 제91조), 위 판례와 같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징계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판례 역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은 안전운전투쟁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⁴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노조법 제41조 제1항).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라는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합니다.⁵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유일노조(기존노조)가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시작한 이후 복수노조(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쳤으나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신설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된 경우 기존노조가 계속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으나 교섭

² 광주지방법원 2010. 11. 17. 2010노2360 판결

³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⁴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다만, 위 판결에서는 해당 쟁의행위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은 점 외에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다른 문제점들이 존재했었고, 그 쟁의행위가 위법하지만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⁵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대표노조가 결정된 후에는 기존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지위를 상실하게 되므로 기존의 쟁의행위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교섭대표노조 결정 후에도 기존 쟁의행위를 유지할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쟁의행위의 실제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쟁의행위의 목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지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사간의 자치적인 교섭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⁶ 따라서 경영권·인사권의 본질적 사항인 경영상 해고, 사업조직통합, 합병·분할, 영업양도 등은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⁷ 최근 판례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데 주목적이 있었던 쟁의행위는 위법하고,⁸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정원 감축 철회 등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정상적인 열차운행을 방해하여 지연운행케 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⁹ 다만, 최근 하급심 판례는 사용자가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여 방송 제작·편집 및 송출 과정을 송출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¹⁰ 그러나 이 사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방송의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특수성이 있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도 사용자의 인사권이나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쟁의행위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쟁의행위의 유형별 검토

쟁의행위의 유형은 가장 대표적인 파업, 태업, 보이콧, 준법투쟁, 직장점거, 직장폐쇄 등이 있습니다. 파업에 대해선 이미 잘 알려진 부분이므로, 아래에서는 파업을 제외한 나머지 쟁의행위 유형에 대해

⁶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도875 판결 등

⁷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⁸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도87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4. 선고 2012구합35726 판결

⁹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¹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2가합3891 판결

살펴보겠습니다.

가. 태업

태업이란 형식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만 불성실하게 근로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즉,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태업은 사업장에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되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부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에 따라야 합니다. 최근 판례는 태업의 경우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가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¹¹

나. 보이콧

보이콧(불매운동)이란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해 상품구입 또는 시설·서비스이용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할 것을 호소하는 정의행위입니다.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을 1차적 보이콧,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사용자와의 거래단절을 요구하는 것을 2차적 보이콧이라 합니다. 1차적 보이콧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2차 보이콧(불매운동)은 사용자에 대한 정의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하고, 2차 보이콧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노무거부 행위는 정당한 정의행위로서의 민·형사상 면책 보호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¹² 판례는 사용자의 매장에서 쇼핑 중인 고객에게 사용자의 물건을 구매하지 말라고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업무 방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¹³

다. 준법투쟁

¹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¹² 협력 68140-392, 1999. 8. 31.

¹³ 서울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2누11976 판결

준법투쟁이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을 평소보다 엄격히 지킴으로써 업무의 능력이나 실적을 떨어뜨려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집단행동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 거부, 집단휴가사용, 안전보건투쟁 등이 있습니다. 준법투쟁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면 정의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노조법 제2조 제6호). 최근 대법원 판결(형사)은 업무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방법으로 열차가 10분에서 46분간 지연 운행되도록 한 행위를 정의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¹⁴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하급심 판결(민사)은 근로자들의 안전규정 준수가 객관적으로 요청하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당 지연운영(안전투쟁)을 정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¹⁵ 이와 같이 실제 사안에서 준법투쟁이 정의행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형태의 준법투쟁의 경우 정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라. 직장점거

직장점거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사업장, 공장 등 회사 내에서 퇴거하지 않고 장시간 체류하는 보조적 정의행위입니다. 판례는 직장점거와 관련하여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정의행위이지만,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¹⁶ 하지만 노조법은 생산시설이나 주요업무시설의 점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노조법 제42조 제1항), 생산시설이나 주요업무시설의 경우에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라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¹⁴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¹⁵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09가합13699 판결

¹⁶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것입니다.¹⁷ 판례는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게 대한 정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경우(부분적·병존적 점거일지라도)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게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¹⁸

마. 직장폐쇄

직장폐쇄란 근로자들의 정의행위에 대항하여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사용자측의 정의행위입니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정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고,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노조법 제46조).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정의행위로 인해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어져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박을 받아 이를 대항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정당합니다.¹⁹ 최근 하급심 판결은 노조가 정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²⁰ 이 판결은 노조가 2차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는 노조의 위법·적대적 행위가 뚜렷하게 잦아들어 회사가 안정을 찾으려면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어져 사용자측이 힘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른 하급심 판결은 노조가 정시출근, 연장근무 거부 등의 적법한 정의행위를 5일 정도 하였는데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후 노조가 적극적인 근로제공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84일간 진행한 직장폐쇄는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²¹ 한편,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고,²² 직장폐쇄가 적법한 이상 회사 측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들어간 경우에는

¹⁷ 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270쪽

¹⁸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

¹⁹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합5734 판결

²⁰ 대전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2나6378 판결

²¹ 전주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합5734 판결

²²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²³

4. 인사노무담당자의 대응방안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인사담당자들은 당황하게 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쟁의행위에 대해 사전에 정확한 지식과 최근 판례의 경향을 습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쟁의행위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쟁의행위의 절차·목적 등 위법성이 없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 그 쟁의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법투쟁의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법규를 준수하는 형태의 준법투쟁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법투쟁에 대해 정확한 법적 판단 없이 선불리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간주하여 징계할 경우 문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방어적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이 아니라 부분파업을 할 경우에는 어느 시점부터 직장폐쇄가 가능한지 그리고 직장폐쇄를 푸는 시기를 가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므로, 직장폐쇄를 결정할 때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²³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 법률 논단 ■

[조세] 2015년 M&A 개정 세법²⁴



(법무법인 지평 **임승혁** 공인회계사)

M&A 관련 세제는 2010년 7월 1일 대폭 개정되어 합병 분할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다양한 유형의 거래에 대한 특례가 일괄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세법의 운용과정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되어 2012년 1월 1일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에서만 과세(또는 과세 이연)하고 분할신설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은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승계하여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M&A 세제의 큰 틀에 대한 개정은 없었고 세부적인 정비를 위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시행되는 개정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제외 기한 연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할증하여 평가됩니다. 즉 주주 1인이 그 특수관계인과 함께 어느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 보유 지분율의 수준과 회사의 규모에 따라 보유한 주식을 아래 표와 같이 10~30%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손법인, 청산 확정 법인 등은 이러한 할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분율	중소기업 외	중소기업
50% 이하	20%	10%
50% 초과	30%	15%

²⁴ 본 원고는 월간조세 2015년 4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위와 같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개정에서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은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뿐만 아니라 위 조세특례제한법 할증평가 적용 제외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득세법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 상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할증평가 적용 제외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뿐만 아니라, 법인과 개인이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의 세법 적용에 있어서도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과다법인 보유 주식 판정기준 보완

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율	
일반 주식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20%
기타자산 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 주식		누진세율(6~38%)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누진세율(6~38%) + 10%
		기타	누진세율(6~38%)

*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별도

종전 규정에 따르면 위 표에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이란 다음 요건을 갖춘 주식을 말합니다.

구 분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주식 발행 법인의 업종	모든 업종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및 전문휴양시설업
주식 발행 법인의 부동산 비율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 (자산총액) ≥ 50%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 (자산총액) ≥ 80%
주주의 양도 주식규모	3년 통산 50% 이상 양도	요건 없음

금번 개정에서는 위 표에서 부동산 비율의 판단에 있어, 분자에 해당 법인이 소유한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 소유한 특정법인 또는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가액에 그 특정법인 또는 부동산과다법인의 부동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부동산 비율의 분자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 다음의 자산 가액을 합산합니다.

- ①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
- ② 소유한 특정법인 주식 가액 x 소유한 특정법인의 부동산 비율
- ③ 소유한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가액 x 소유한 부동산과다법인의 부동산 비율

이러한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3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적용됩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는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일

정한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과점주주는 부족한 금액 중 지분율(의결권 있는 주식만 고려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종전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로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의 주주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적격합병·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완화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손익 과세 이연 등 특례가 적용되는 적격합병의 요건으로는 사업목적 요건, 지분의 연속성 요건 및 사업의 계속성 요건이 있습니다. 지분의 연속성 요건의 하나로서 피합병법인의 핵심 지배주주(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5항의 주주)는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합니다. 한편,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보유하여야 사후관리 규정(예컨대 과세 이연된 양도손익을 합병법인에서 과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격합병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 ① 해당 주주가 합병으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한 경우
- ② 해당 주주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 ③ 해당 주주가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 ④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38조 또는 제38조의 2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 ⑤ 해당 주주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⑥ 해당 주주등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014년 9월 26일 개정에서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주식 처분 사유에 다음의 경영정상화계획(이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식 처분이 추가되었습니다.**

- ⑦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이 부실징후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 대상 기업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 약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한편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분할법인의 핵심 지배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로 받은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보유하여야 사후관리 규정(예컨대 과세 이연된 양도손익의 과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식보유 요건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주식 처분은 적격합병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개정된 내용이 적격분할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개정 규정은 2014년 10월 1일 이후 주식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5.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식 양도차익 과세 이연

내국법인(이하 '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교환한 경우,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교환으로 양수한 주식을 처분(상속·증여 포함)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소유 주식 전부를 양도할 것
- ② 교환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즉 교환양수법인)의 주식과 교환할 것
-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주식을 양수할 것
 - i) 교환양수법인이 이미 보유하거나 새롭게 발행한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
 - ii)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

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주식 양도 양도차익의 과세 이연 특례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가 적용 시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6. 적격현물출자 과세 이연 유지

법인이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시가에서 출자한 순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액만큼의 양도손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격현물출자에서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얻은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 이연된 양도차익은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 또는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가상각자산, 토지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익금에 산입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 이연된 양도차익이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과세 이연이 유지됩니다.

종전에는 피출자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 제외)하는 경우만 부득이 한 사유로 정해져 있었

습니다. 금번 개정에서는 **부득이 한 사유에 피출자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최초로 출자법인에 적격합병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 ① 피출자법인은 출자법인의 단독 출자에 따라 설립된 완전자회사일 것
- ②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였고, 출자받은 자산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 ③ 현물출자 이후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 ④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일 것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3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7.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 추가과세 보완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0%, 20% 또는 22%,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적격분할·적격물적분할·적격현물출자·조직변경 및 교환(법인세법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세율(10%)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번 개정에서는 **추가 세율(10%)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적격합병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법률 논단 ■

[건설부동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관계

정원 변호사 | 윤성후 변호사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증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의 관계

1. 사건 개요와 쟁점

시행사 주식회사 더피앤디(이하 '더피앤디')는 주식회사 한라(이하 '한라')를 시공사로 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한라비발디루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 및 분양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은 한라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한라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후 분양자의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한편, 하자보수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한라는 소송 도중 더피앤디에 대한 공사대금잔액채권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와 상계하였습니다.

위 상계에 의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감축된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으로 문제되었습니다.

2. 원심의 판단

위 쟁점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서울보증보험의 주장에 따라, 한라의 위 상계에 의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도 같은 금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그 판시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은 그 인정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 ②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도급인을 대위하여 시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이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③ 다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와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채무는 그 대상인 하자가 일부 겹칠 수 있고 그렇게 겹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하자의 보수를 위해 존재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중 한 권리를 행사하여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 상당 금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금원이 지급된 하자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될 수는 있다.
- ④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

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시사점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구분소유자등 권리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지급청구권이 그 인정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책임이며, 단지 결과적으로 책임의 대상이 하자가 일부 겹치는 부분에 있어 해당 하자보수에 갈음한 보수비용이 지급되면 그렇게 겹치는 부분에 한하여 다른 권리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은 앞선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인된 법리입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이 사건에서는 이에 더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 즉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채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와 같은 관계, 즉, 별개의 권리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지급되어 권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함께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에 관한 소송에서는 피고와의 관계 및 청구원인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각 피고에 대한 책임 간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점, 다만 동일한 하자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현실적인 만족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상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하자보수금등](#)

■ 법률 논단 ■

[헌법]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정원 변호사 | 박보영 변호사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母)은 2005년 4월 25일 유○술(夫)과 혼인하였다가 2011년 12월 19일 이혼에 합의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2012년 2월 28일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송○민(生父)과 동거하면서 2012년 10월 22일 딸(子)을 출산했습니다.

청구인은 2013년 5월 6일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동거인이자 생부의 성에 따라 송○윤이라는 이름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딸이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하였으므로 전남편의 성(姓)에 따라(유○윤) 전남편의 친생자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출생신고를 보류했습니다. 서울의대 법의학교실의 유전자검사 결과 송○윤은 송○민의 친생자로 확인되었고, 송○민은 송○윤을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하려 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 844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에서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심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합니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2.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모(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형성 및 한계

- 혼인 종료 후 출생한 자의 친생추정 여부와 방법을 정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친생추정의 기준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친자관계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는 입법형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헌. 소송을 통하여 친생부인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친생추정의 비합리성이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아무런 법률상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에 따른 친생추정을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임.

- 심판대상조항의 제정 당시와 달리 오늘날은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친자관계 증명 가능성이 되어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없어졌음. 반면 사회적으로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고 법률적으로 여성의 재혼금지기간도 폐지되어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시간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심판대상조항은 모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에도 부가 친생자 추정으로 인한 부양의무 부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데에도 장애가 될 뿐임.
- 특히 청구인과 같이 이미 모와 부(夫)의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였고 이 사건과 같이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오직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친생추정의 주된 목적인 자의 복리에 비추어 보아도 지나치게 불합리한 제한임.
-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민법 제정 이후의 사회적·의학적·법률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300일의 기준만 강요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겪는 구체적이고 심각한 불이익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함.

(3)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

-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이 즉시 없어지게 되므로, 그 자가 부(夫)의 친생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소멸되어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됨. 또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상태를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개선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함.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함.

3. 결정의 의의

심판대상조항은 1958년 민법 제정 당시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혼인종료 후 300일'이라는 친생 추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여 이미 그 합리성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이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子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탈법행위를 부추기거나, 오히려 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을 초래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아니하고 출생 당시 분만에 관여한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 2인이 작성한 출생증명서(인우보증서)만 있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母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처벌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출생사실을 아는 2인과 공모하여 子의 출생일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후로 변경하여 허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母가 子에 대한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미 출생한 子의 출생신고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子가 친생자로서의 권리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적 지위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마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은, 민법 제정 이후 사회적·의학적·법률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인 기준만 강요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에게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던 심판대상조항이, 母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변화된 현실과 시대적 상황을 법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헌법소송을 통해 해결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정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우려하여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향후 개선입법의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다운로드 :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

■ 최신 판례 ■

**[도산]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제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도 소멸하는지**

배성진 변호사 | 이강호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2008년 7월 11일 甲회사와 공장 내 신차 개발과 관련된 공장 신설공사 및 증설공사를 총 공사대금 11,292,000,000원(신설공사 9,200,000,000원 + 증설공사 2,09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완성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증설공사를 완공하고 신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甲회사는 자금부족에 시달리다가 2009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년 2월 6일 甲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甲회사를 '회생채무자'라 함).

한편 원고는 2009년 1월 23일경 甲회사에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 기성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

그 후 원고는 회생채무자의 공동관리인들에게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2009년 2월 17일경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공동관리인들은 2009년 3월 19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여 2009년 3월 20일 원고에게 도달함.

원고는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11,387,200,000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생법원에 이를 주위적으로 유치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으로, 예비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함. 이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공동관리인들은 원고가 신고한 회생담보권 전부에 대하여 부인하고, 회생채권으로 10,397,200,000원을 시인하면서 990,000,000원을 과다청구로 부인함. 원고는 위 11,387,200,000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위적으로 회생담보권임을, 예비적으로 회생채권임을 확정해 달라는 취지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

위 법원은 2009년 10월 1일 원고가 증설공사를 완공하고 신설공사 중 80%를 완성하여 공사대금채권 10,397,200,000원을 갖고 있으나 유치권자로서 공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1.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담보권 11,387,20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2.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 990,00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함.

원고는 2009년 10월 12일 위 결정을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1개월 내인 2009년 11월 9일 회생채무자의 공동관리인들을 상대로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함.

그리고 회생채무자는 2011년 3월 14일경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회생채무자의 공동관리인들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함.

한편 이 사건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9년 1월 13일경까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증설공사와 신설공사의 기성고 상당액(부가가치세 포함)은 11,166,595,000원으로, 그 중 신설공사의 기성고 상당액은 8,865,395,000원으로 감정됨.

2. 쟁점

-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한지 및 그 후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제법상의 담보권이 소

멸한 경우,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도 소멸하는지

3. 판시사항

- 구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제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데 영향이 없다.
- 원심은,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 실제법상의 담보권이 아니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회생담보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유치권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회생담보권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원고가 2009년 1월 14일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세우기 전까지 이 사건공사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을 수급인인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2009년 1월 23일경 甲회사에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것임을 통지하고, 2009년 1월 29일경부터 甲회사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이 사건 공장의 주 출입구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팻말을 설치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설치된 현장사무소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공사장비와 자재를 이용하여 2009년 3월경까지 이 사건 공장 외벽의 유리창 및 자동출입문 설치공사 등의 추가보완공사를 계속해 온 점 등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적어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09년 2월 6일까지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4. 해설

구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르면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이 됩니다(구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또한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구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권리가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구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그런데 비록 구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에서는 기준 시점을 '회생절차개시 당시'로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한 후 그 후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제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도 소멸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습니다.

먼저 '회생담보권'이란 '담보권(擔保權)'이 아니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債權)'입니다. 즉, 회생담보권은 종전에 '담보권'이라 불리던 것들(유치권, 질권)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달리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중에서 그 담보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채권'을 담보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채권 부분(회생채권)과 구별하기 위해 새로이 붙인 이름인 것입니다. 회생채무자로서는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애초의 약정대로 변제하면서 회생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그에 대한 채권자들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면제, 변제기 연장 등)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액)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채권(액)에 비하여 더 좋은 조건으로 권리를 변경해 주겠다는 것이 채무자회생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대상 판결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만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하고, 그 후에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제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상 판결은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채무자의 가치를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배하느냐"를 위해서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도 '회생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5. 다운로드 :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1나9261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4186 판결](#)

■ 최신 판례 ■

[보험]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손해보험금의 공제 여부

배성진 변호사

1. 사실관계

A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되어 인근 B사 건물에 옮겨붙음.

B사의 손해는 6억 6,200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B사는 보험회사로부터 3억 2,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음.

B사는 A사를 상대로 나머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제1심은 화재 사고에 관하여 A사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B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함.

제2심은 A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인정하고, 해당 손해액 3억 9,700만 원에서 B사가 지급받은 보험금 3억 2,400만 원을 공제한 7,300만 원에 관하여 B사의 책임을 인정함.

제2심의 판단은 대법원 2009. 4. 49. 선고 2008다27721 판결에 따른 것으로, 그 취지는 다음과 같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제도에 따라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결과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잃고 그 제3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지급된 보험금액만큼 감소되므로(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1012 판결 참조),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는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

-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서 피해자가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전액 공제되는지가 쟁점임.

3. 판시사항

-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 B사가 A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B사의 전체 손해액에서 B사가 수령

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경감된 A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으므로 A사는 B사에 손해배상책임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A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B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A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4. 해설

- 대상 판결은 불법행위 등의 피해자가 가해 목적물에 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손해 일부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나머지 손해에서 지급 보험금 전액이 공제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판결입니다.
- 대상 판결의 법리에 따라 피해 목적물에 관해 체결된 손해보험이 전부보험이라 하더라도, 보험자는 지급 보험금 전액에 관해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손해 전부를 전보 받은 후 가해자에게 잔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만 보험자대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 이로써 보험회사의 구상실무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최신 법령 ■

[노동] 고용보험법 등 개정

이광선 변호사 | 구자형 변호사

최근 고용보험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5년 5월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법률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최근 시행된 개정 고용보험법(법률 제13041호, 2015. 1. 20. 공포, 2015. 4. 2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08호, 2015. 4. 20. 공포, 2015. 4. 21. 시행)은 실업급여수급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는 150만 원까지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개설한 전용계좌(‘실업급여수급계좌’)에 실업급여를 입금해야 하며(제37조의2 제1항),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제37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8조의3).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래 압류금지 대상이지만(고용보험법 제38조), 실업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실업급여는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되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대결 2008. 12. 12. 2008마1774 등 참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는 별도로 법원에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거나 실업급여가 예금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미리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전용계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26호, 2014년 1월 21일 제정)이 2015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부칙 제1조).

-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등 : 2015년 1월 1일 시행
-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 2016년 1월 1일 시행
- 30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 : 2017년 1월 1일 시행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사용자는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구인 공고를 내서는 안 되며(제4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구인 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동조 제2항).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16조), 제4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7조 제1항).

나.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제6조).

다.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사용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직자에게 채용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제9조).

라. 채용서류의 반환 등

사용자는 채용대상자가 확정된 후 미채용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제11조).

3. 다운로드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최신 법령 ■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배성진 변호사 | 이강호 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5년 5월 12일 대통령령 제26236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중소기업 등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총액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3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회생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규정 등도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개정 법률 제293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30억 원으로 함(제15조의3 신설).

2. 다운로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최신 법령 ■

[자본시장] 분리형 BW 허용안 국회 계류 중

채희석 변호사

1. 주요 내용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가 분리형 BW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2항). 종래 분리형 BW는 대주주가 사모 투자자와 약정하여 신주인수권만 저가로 매집하고 사모 투자자에 대해서는 발행사가 높은 채권금리를 제공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분리형 BW 발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스닥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분리형 BW 발행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공모 방식으로 분리형 BW를 발행할 경우 대주주의 편법적 악용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감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가 분리형 BW를 발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사모 형태로 이를 발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분리형 BW를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50인 미만의 사모 발행도 공모로 간주될 수 있어 편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하위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악용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장회사에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신 법령 ■

[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배성진 변호사 | 하지인 변호사

1. 주요 내용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2015년 4월 9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 보험회사가 행사하는 구상권의 상한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200만 원이었으나 앞으로 300만 원으로 변경되며,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상한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개정된 조문은 2015년 4월 9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구상금액) 법 제2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사고 1건당 300만 원
2. 재물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의 경우 : 사고 1건당 100만 원

부칙 제2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다운로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단신 ■

최승수 변호사,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인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

최승수 변호사는 지난 1월 12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문화협력의정서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EU 문화협력위원회 중재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15년 1월 12일부터 2018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최승수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최승수 변호사는 지난 3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최승수 변호사, 국제거래법학회의 신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K-Pop 해외진출에 따른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

최승수 변호사는 지난 3월 13일 국제거래법학회의 신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K-Pop 해외진출에 따른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단신 ■

임성택 변호사,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는 지난 4월 6일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2015년 4월 6일부터 2016년 4월 5일까지입니다.

임성택 변호사, '개정 상법 제732조와 장애인 차별'을 주제로 법학평론에 연구논문 기고

임성택 변호사는 지난 2월 '개정 상법 제732조와 장애인 차별'을 주제로 법학평론에 연구논문을 기고 하였습니다.

[관련 논문]

- [법학평론 - \[연구논문\] 개정 상법 제732조와 장애인 차별\(2015. 2.\)](#)

■ 단신 ■

배성진 변호사,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배성진 변호사**)

배성진 변호사는 지난 3월 26일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배성진 변호사, 고려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문서작성' 강의 진행

배성진 변호사는 지난 3월 2일부터 고려대학교 로스쿨 '법문서작성' 강의를 맡아 한 학기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단신 ■

장윤정 변호사, 한국여성벤처협회 고문변호사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장윤정 변호사)

장윤정 변호사는 지난 1월 1일 한국여성벤처협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 단신 ■

최정식 변호사, KOTRA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자문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최정식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는 지난 5월 21일 KOTRA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단신 ■

박근배 변호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자문위원으로 위촉



(법무법인 지평 **박근배 변호사**)

박근배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단신 ■

권용숙 변호사, 인니 비즈클럽에서 '인도네시아 계약 및 분쟁실무'를 주제로 강의



(법무법인 지평 권용숙 변호사)

인도네시아 사무소 권용숙 변호사는 지난 3월 26일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카르타 사무소가 주최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인 모임인 인니 비즈클럽에서 '인도네시아 계약 및 분쟁실무'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 단신 ■

류혜정 변호사, 한러 정경컨퍼런스에서 '경제통상'을 주제로 발제



(법무법인 지평 류혜정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는 지난 3월 6일 한러수교 25주년을 맞아 한러대화(KRD) 사무국이 주최한 한러 정경컨퍼런스의 제2세션(경제통상)에서 '러시아 투자환경에서의 법적인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 단신 ■

김문희 변호사, '주요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의 기회와 위기'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법무법인 지평 [김문희 변호사](#))

김문희 변호사는 지난 4월 14일 한국방송학회에서 주최한 '주요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의 기회와 위기'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이데일리 - 방송협회 'FTA 체결에 따른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의 기회와 위기' 세미나\(2015. 4. 14.\)](#)

■ 단신 ■

**이광선 변호사,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기학술대회의 제 1부(주제 : 파견
법상 직접고용에서 쟁점과 해석) 토론자로 참석**



(법무법인 지평 **이광선 변호사**)

이광선 변호사는 4월 10일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기학술대회의 제 1부[주제 : 파견법상 직접고용에서 쟁점과 해석(현대차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 단신 ■

박성철 변호사, '제3국 법인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규제법 검토'를 주제로 법학평론에 연구논문 기고



(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는 지난 2월 '제3국 법인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규제법 검토'를 주제로 법학평론에 연구논문을 기고하였습니다.

[관련 논문]

- [법학평론 - \[연구논문\] 제3국 법인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규제법 검토\(2015. 2.\)](#)

■ 단신 ■

민창욱 변호사, 논문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 -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사건의 법적 쟁점' 저스티스 4월호 게재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

민창욱 변호사의 논문이 저스티스 4월호에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규율권한 - 사립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사건의 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습니다.